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6
----------	-----

제출연월일 : 2005년 월 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행정자치부의 「지방소방관서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전담 부서 설치 및 소방공무원 직급조정 지침」에 의한 소방력 보강과
- 진천소방서 및 봉양청산파출소 신설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 2,545명 ⇒ 2,595명 (증50명)
 - 집행기관의 정원 : 변동없음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변동없음
 - 소방공무원의 정원 : 997명 ⇒ 1,047명 (증50명)
 - 교육공무원의 정원 : 변동없음
- 직급별 증감내역 : 소방직 50명
 - 소방정 증1, 소방령 증11, 소방경 증22, 소방위 감1, 소방장 감2, 소방교 증8, 소방사 증11
- 다른 조례의 개정(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진천소방서 신설에 따른 위치 및 관할구역 변경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취 : 붙임

6. 참고자료 : 붙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2,545명”을 “2,595명”으로 하고, 동조 제2호중 “997명”을 “1,047명”으로 한다.

별표중 정원의 총수 2,545명을 2,595명(증원 50명)으로 하고, 직속기관의 정원 1,240명을 1,290명(증원 50명)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소방서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중 충청북도증평소방서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 다음에 충청북도진천소방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충청북도증평소방서	증평군 관내	증평군, 괴산군 일원
충청북도진천소방서	진천군 관내	진천군 일원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직종별 \ 기관별	합 계	본 청	의 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총 정 원	2,595	947	65	1,290	293	
정무직(도지사)	1	1				
일반직	소 계	1,043	779	40	63	161
	2~3급	1		1		
	3 급	7	5		1	1
	4 급	55	36	7	4	8
	5 급	204	161	7	14	22
	6 급	349	264	13	18	54
	7 급	373	275	12	22	64
	8 급	53	37		4	12
일 별 · 반 정	소 계	4	3	1		
	5 급	2	1	1		
	6 급	1	1			
	7 급	1	1			
별 정 직	소 계	17	10	1	5	1
	1 급	1	1			
	5 급	2	2			
	6 급	9	3		5	1
	7 급	3	2	1		
	8 급	1	1			
연 구 직	소 계	138	1		109	28
	연구관	21			18	3
	연구사	117	1		91	25
지 도 직	소 계	24			24	
	지도관	6			6	
	지도사	18			18	
소 방 직	소 계	1,047	59		988	
	소방정	10	2		8	
	소방령	29	10		19	
	소방경	58	4		54	
	소방위	67	6		61	
	소방장	142	11		131	
	소방교	324	24		300	
	소방사	417	2		415	
교 원	소 계	44			44	
	학 장	1			1	
	교수·부교수 조교수·전임강사	32			32	
	조 교	11			11	
기 능 직	소 계	277	94	23	57	103
	6 급	8	5	1	1	1
	7 급	29	10	3	4	12
	8 급	58	18	1	6	33
	9 급	88	26	8	27	27
10 급	94	35	10	19	30	

산구 조 문 대 비 표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2,545명</u>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생략)</p> <p>2. 소방본부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u>997명</u></p> <p>3. ~ 4. (생략)</p>	<p>제2조 (정원의 총수) <u>2,595명</u></p> <p>1. (현행과 같음)</p> <p>2. : <u>1,047명</u></p> <p>3. ~ 4. (현행과 같음)</p>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현 행	개 정 안																																																						
<p>[별표2] 소방서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명 칭</th> <th style="width: 15%;">위 치</th> <th style="width: 70%;">관 할 구 역</th> </tr> </thead> <tbody> <tr> <td>충청북도청주 동부소방서</td> <td>청주시 관내</td> <td>청주시 상당구, 청원군 중 내수읍, 복이면, 남일면, 가덕면, 문의면, 낭성면, 미원면, 오창면 일원, 보은군 일원</td> </tr> <tr> <td>충청북도청주 서부소방서</td> <td>청주시 관내</td> <td>청주시 흥덕구, 청원군 중 옥산면, 강내면, 강외면, 남이면, 부용면, 현도면 일원</td> </tr> <tr> <td>충청북도충주소방서</td> <td>충주시 관내</td> <td>충주시 일원</td> </tr> <tr> <td>충청북도제천소방서</td> <td>제천시 관내</td> <td>제천시, 단양군 일원</td> </tr> <tr> <td>충청북도영동소방서</td> <td>영동군 관내</td> <td>영동군, 옥천군 일원</td> </tr> <tr> <td>충청북도증평소방서</td> <td>증평군 관내</td> <td>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일원</td> </tr> <tr> <td><신 설></td> <td></td> <td></td> </tr> <tr> <td>충청북도음성소방서</td> <td>음성군 관내</td> <td>음성군 일원</td> </tr> </tbody> </table>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충청북도청주 동부소방서	청주시 관내	청주시 상당구, 청원군 중 내수읍, 복이면, 남일면, 가덕면, 문의면, 낭성면, 미원면, 오창면 일원, 보은군 일원	충청북도청주 서부소방서	청주시 관내	청주시 흥덕구, 청원군 중 옥산면, 강내면, 강외면, 남이면, 부용면, 현도면 일원	충청북도충주소방서	충주시 관내	충주시 일원	충청북도제천소방서	제천시 관내	제천시, 단양군 일원	충청북도영동소방서	영동군 관내	영동군, 옥천군 일원	충청북도증평소방서	증평군 관내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일원	<신 설>			충청북도음성소방서	음성군 관내	음성군 일원	<p>[별표2] 소방서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명 칭</th> <th style="width: 15%;">위 치</th> <th style="width: 70%;">관 할 구 역</th> </tr> </thead> <tbody> <tr> <td>(현행과 같음)</td> <td></td> <td></td> </tr> <tr> <td>(현행과 같음)</td> <td></td> <td></td> </tr> <tr> <td>(현행과 같음)</td> <td></td> <td></td> </tr> <tr> <td>(현행과 같음)</td> <td></td> <td></td> </tr> <tr> <td>(현행과 같음)</td> <td></td> <td></td> </tr> <tr> <td>충청북도증평소방서</td> <td>증평군 관내</td> <td>증평군, 괴산군 일원</td> </tr> <tr> <td>충청북도진천소방서</td> <td>진천군 관내</td> <td>진천군 일원</td> </tr> <tr> <td>(현행과 같음)</td> <td></td> <td></td> </tr> </tbody> </table>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충청북도증평소방서	증평군 관내	증평군, 괴산군 일원	충청북도진천소방서	진천군 관내	진천군 일원	(현행과 같음)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충청북도청주 동부소방서	청주시 관내	청주시 상당구, 청원군 중 내수읍, 복이면, 남일면, 가덕면, 문의면, 낭성면, 미원면, 오창면 일원, 보은군 일원																																																					
충청북도청주 서부소방서	청주시 관내	청주시 흥덕구, 청원군 중 옥산면, 강내면, 강외면, 남이면, 부용면, 현도면 일원																																																					
충청북도충주소방서	충주시 관내	충주시 일원																																																					
충청북도제천소방서	제천시 관내	제천시, 단양군 일원																																																					
충청북도영동소방서	영동군 관내	영동군, 옥천군 일원																																																					
충청북도증평소방서	증평군 관내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일원																																																					
<신 설>																																																							
충청북도음성소방서	음성군 관내	음성군 일원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충청북도증평소방서	증평군 관내	증평군, 괴산군 일원																																																					
충청북도진천소방서	진천군 관내	진천군 일원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02조 (행정기구) ①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⑤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7조 (실·국·본부등 기구의 설치) ①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실·국·본부 및 과·담당관의 설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국·본부의 개편, 명칭변경 및 사무분장을 함에 있어서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21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2. 본청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⑤ (생략)

비 용 소 요 추 계 서

1. 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

2.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

○ 기구 신설

- 소방관서 : 진천소방서, 봉양파출소, 청산파출소
- 구조구급과 : 청주동부서부소방서, 제천소방서

○ 정원의 총수 : 2,545명 ⇒ 2,595명(증50명)

- 소방공무원 : 997명 ⇒ 1,047명(증50명)

3. 비용소요 내역

(단위 : 천원)

구분(예산과목)	소요비용	산출근거
총계	2,656,084	
°인건비	2,047,527	
- 기본급	964,740	※ 2005년도 예산편성지침 적용
- 수당	539,055	- 소방정(1명) : 20호봉 기준
- 정액급식비	78,000	- 소방령(11명) : 18호봉 기준
- 교통보조비	77,160	- 소방경(22명) : 18호봉 기준
- 명절휴가비	120,591	- 소방위(△1명) : 17호봉 기준
- 가계지원비	200,986	- 소방장(△2명) : 15호봉 기준
- 연가보상비	66,995	- 소방교(8명) : 12호봉 기준
- 기타직보수		- 소방사(11명) : 10호봉 기준
- 일용인부임		
°물건비	259,300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400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8,000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500	
- 직책급업무추진비	13,200	
- 직급보조비	97,440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22,760	
°이전경비	349,257	
- 성과상여금	32,155	
- 연금부담금	230,467	
- 국민건강보험금	43,303	
- 연금지급금	43,332	